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 의무 신설〉
■ 최혁진·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7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 의무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혁진·박성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9.
3. 회 부 일 : 2026.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 의무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지자체장등”이라 함)에게 계약 체결 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4(사회적 가치의 실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은 계약 체결 시 지자체장등이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원칙, 부당한 특약 금지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¹⁾, 지자체장등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청렴서약제를 제출받고²⁾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³⁾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장등이 계약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장등이 공공계약 체결 시 취약계층 보호, 고용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달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

1)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2)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방계약법」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회연대경제의 정의·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의 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회(2026.3.23.) 및 법제사법위원회(2026.4.22.)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데, 동 제정안에 의하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⁴⁾으로 개정안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동 제정안에 따

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제2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3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7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2.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른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응되므로 해당 제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법 문언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은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5).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는 제외한다.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협업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협업초생산협동조합, 협업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및 제 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하. 그 밖에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

제1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이하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4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둘째, 지자체장등이 계약 시 개정안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타 계약상대방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현재 지방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 범위 확대⁶⁾, 신인도 가점 부여⁷⁾ 등 우대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점, 지방계약법령은 계약의

⑧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하며, 사회연대경제기업생산품의 범위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6)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절차 및 집행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정책적 사항은 현재 제정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등 관련 정책 법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해당하므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범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기술력 중심 경쟁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